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9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민전・박상웅・윤상현

김대식 • 박덕흠 • 김용태

안철수 · 김기웅 · 조정훈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 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	③
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	
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u>있다</u> . 이 경우 교원의 복	<u>있으며, 제4항에 따른 학력·</u>
무 · 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	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교원을 둘 수 있다</u>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